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1. 2. .

제안자 : 김수민 의원 외

1. 제안이유

- 성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 등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맞추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의원의 참여 비율을 명문화하여 여성의 특수성을 의회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위원 정수 중 여성위원 수를 “전체 여성의원 수의 40% 이상”을 포함하도록 신설
- 나.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위원의 수를 “전체 여성의원 수의 40% 이상”을 포함하도록 신설

3. 참고사항

- 국가재정법 제26조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(단, 전체 여성의원 수의 40%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)
2. 기획행정위원회 11명 이내
3. 산업건설위원회 12명 이내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여성의원 수의 40%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체 여성의원 수가 3인 이하일 경우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용례) 제2조제1호 단서 규정은 조례 시행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이 상임위원회를 재구성 할 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<u>다음과 같다.</u> 1. 의회운영위원회 <u>10명 이내</u> 2. 기획행정위원회 <u>11명 이내</u> 3. 산업건설위원회 <u>12명 이내</u> 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(생략) ② (생략) < 신설 >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의회운영위원회 <u>10명 이내 (단, 전체 여성의원 수의 40%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)</u> 2. 기획행정위원회 <u>11명 이내</u> 3. 산업건설위원회 <u>12명 이내</u> 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<u>전체 여성의원 수의 40%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체 여성의원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u>